예 산 총 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6,160,789,078	184,823,672
일반회계		5,511,956,745	165,358,702
특별회계		648,832,333	19,464,970
	기 타 특 별 회 계	648,832,333	19,464,970
	소방특별회계	273,695,768	8,210,873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22,250,349	9,667,510
	농 어 촌 개 발 기 금 특 별 회 계	9,870,092	296,103
	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4,096,010	122,880
	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1,817,409	54,522
	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	35,397,820	1,061,935
	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	1,704,885	51,147

- 제 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-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.
- 제 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.
- 제 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.
-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,824,654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3,5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